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2024. 04. 03. | CO 24-28

인권과 평화의 사각지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서 보 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인권과 평화의 연계 담론은 증가하고 있지만…

4월 5일 종료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5회기에 북한인권 결의안(A/HRC/55/L.19)이 상정되었다. 3월 20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벨기에가 인권이사회에 접수시킨 이 결의안도 크게 보아 예전과 비슷한 내용과 논조를 보이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결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조치와 계속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근래 유엔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담론이 인권과 평화의 연계성이다. 이번에 접수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북한인권과 국제평화·안보의 연계성이 언급되고 있다. 결의안은 그 배경으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를 통해 조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이 지적은 2023년 12월 19일,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문(A/RES/78/218) 상의 구절과 일치한다. 이러한 담론은 이제 생소하지 않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북한정권이 동시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둘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작년 8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공개토론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한반도와 주변 역내의 평화·안보문제와 분리해 파악할 성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두 문제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노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추수기 학생들의 강제 동원, 가족 노력 동원, 해외노동자들의 임금 징발 등이 그것이다. 튀르크 대표가 발언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공식 거론된 사실 자체가 인권과 평화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고,[1]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함을 말해준다.

튀르크 대표의 위 언급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북한인권 연구자들의 조사와 운동단체들의 노고에 힘입은 것이다. 그런 언급들은 더 많은 증언과 분석으로 보완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부정적으로 연계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가운데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미흡한 실태 파악, 부족한 국제적 관심

2003년 3월 26일, 북한 정권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를 열어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여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으로 하는 복무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권리보장법(2014) 등 북한의 아동 법제에서 아동은 "출생부터 16세까지인 자"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고급중학교 학생의 연령과 일치한다.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징집당하거나 군의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 무력분쟁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2]와 불일치한다. 북한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하고 해당 협약위원회와의 기술협력에는 응하고 있다.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조선소년단(만 8~14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북한 주민 개개인의 군사주의적 일생의 출발이다. 2003년 이전 북한은 자원병제인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 왔는데,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등록하고, 만 15세에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고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한다. 이 역시 국제아동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고급중학교에서는 붉은청년근위대에서의 의무적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교내 군사훈련은 물론 야영훈련에서 경계근무, 포복훈련, 실탄 사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실태는 다른 분야의 인권, 그리고 아동인권 내에서도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아 활발한 조사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1)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처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14년 12월 22일이다. 이는 안보리에서 인권문제가 의제화된 세 번째 경우이다.
2) 정식 명칭: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채택일: 2000년 5월 25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와 북한의 관련 국제법 가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2017년 10월 23일 배포된 북한 아동권리협약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PRK/CO/5)에는 북한 아동들이 여성 및 소녀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강제송환, 강제노력동원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장갈등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3] 그러나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고 그에 따라 국제적 대응은 미약한 상태이다. 2019년 5월 9일 발표된 북한인권에 관한 제3차 보편정례검토(UPR) 권고 문서를 보면 북한에 아동의 무장갈등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한 인권이사국은 토고뿐이다.[4] 지난 3월 30일 인권이사회에 접수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강제송환, 식량 부족 등 여러 아동권리 침해가 언급되고 있지만, 아동의 군사활동과 무장갈등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 언급은 빠져 있다.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서도 아동권리는 18회 언급되고 있지만 아동의 군사활동은 제외되어 있다. 물론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과정에서 북한에 아동의 무장갈등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있어왔다. 다만, 그것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전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인권침해의 연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어나는 근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그 주요 고리라 할 수 있는 아동의 군사활동은 주목할 가치가 크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 아동의 체계적인 군사활동은 아동인권 침해와 북한체제의 군사화, 양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아동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자유로운 교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아동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군사주의를 내면화시켜 북한체체의 군사화를 재생산한다. 요컨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함은 물론 인권 침해와 군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연결고리이다. 그래서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을 중단시키는 일은 북한 아동의 인권 보호는 물론 북한체제의 탈군사화와 북한 안팎에서 인권과 평화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3) 이 최종견해는 북한에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매춘·포르노그라피 선택의정서 이행과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보호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도 촉구하고 있다.
4) 이 UPR에서 스위스는 북한에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가입을 촉구하였다. 이 의정서 제4조 3항 다항에 “15세 이하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규약을 가입·비준했으므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고 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중단 캠페인은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 북한에 아동 무장갈등 연루 선택의정서 가입과 국제아동인권법을 준수하는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고, ▲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위 사항을 포함시켜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활동에 가장 관심이 높은 한국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연구집단과 관련 시민단체는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해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더욱 풍부하게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주의 및 군사화는 인권과 평화의 악순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이자 작동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이론을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에 적용할 가치가 높다. 이런 융합적 연구조사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그룹과 평화그룹 사이에 활발한 대화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핵능력 고도화의 길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에 주목하는 일은 북한에서 심화되고 있는 군사화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편가치들의 조화로운 추구 방안을 개발해 대안적 통일론을 닦는 일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